

익숙한 정체성, 낯선 자리

〈개인의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에 주목하는 전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개인을 집단의 상대어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면 말이다. 오히려 전시는 개인의 위치가 얼마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관계의 재배치를 통해 그 자리를 얼마나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 전시의 제목은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국가의 법령, 한결같은 교실의 격자형 자리 배치를 다루는 이 전시는 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호소하기보다 자리(position)를 묻는가? 또한, 참여자와 관객의 반응을 열어놓는 작업 방식은 개인의 자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험하는가?

관객과 참여자를 제도의 규율을 논의하는 장으로 초대하는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는 법이라는 이슈를 문화와 공동체에 주목하여 다룸으로써 참여의 특별한 결을 만들어낸다. 법적 당사자는 좁은 범위로 상정되는 반면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은 우리 모두를 더 포괄적으로 연루시키고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1] 또한 작업은 법 앞에 평등한 개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 간 위치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권력의 통제 코드를 분리 및 재배치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자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입한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은 동일시나 타자화^[2]에서 벗어난 개인들의 관계와 위치는 어떤 형태일지 고심하게 한다.

<div><div></div>타임-라인의 내적 구성: 탈/접합하는 역사</div>
<div> <div><div>1953 형법 제269조 – 낙태죄 개정</div></div> <div><div>1962 균형법 제92조 6항 – 동성애 처벌법</div></div> <div><div>1968 주민등록법 시행령</div></div> <div><div>1986 모자보건법 제14조 – 우생학적 차별</div></div> <div><div>1999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강제불임화</div></div> <div><div>2008 호주제</div></div> <div><div>2016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성판매자 처벌법 합헌</div></div> <div><div>2019 낙태죄 헌법 불합치</div></div> <div><div>2019 장애인 등급제</div></div> </div>

^[1] 미술사학자 조앤기(Joan Kee)는 현대미술과 법의 관계를 논의하는 강연에서 많은 작업들이 자유주의에 근거한 권리(right)의 측면에서 법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Torres)와 같은 작가들은 책임(duty)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임윤경의 작업 또한 권리보다 책임에 더 주목하여 법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 "When Art Lays Down the Law"조앤기, https://www.e-flux.com/live/265244/e-flux-lectures-joan-kee-when-art-lays-down-the-law/ (2020년 9월 1일 접속)

^[2] 여성학자 정희진은 강연에서 타자화는 ‘규정 권력(definer)’을 가진 주체의 입장에서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주체는 자아(개인)으로 존재하는 반면 타자는 어떤 집단의 한 사람, 그 속성으로 정체되곤 한다. 그 속성으로 인해서 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비화된 대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예: 오리엔탈리즘)

황귀영 현대미술가

〈타임-라인:국가통제코드(검정리본밴드)〉에서는 법조항의 개정과 폐지가 새겨진 라벨을 관객의 옷에 달아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작가가 구성한 법조항은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를 타자화하는 가부장제의 관점이 투영된 국가법에 의해 개인의 내밀한 삶이 윤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의 차원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바느질을 통해 옷에 라벨을 달아주는 증여 활동은 어떤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정보나 문구를 굵조에 담아 나눠주는 캠페인과는 결이 조금 달라 보인다. 우선은 하나의 법조항이 아니라 여러 법조항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특정 입장으로 관객의 결집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단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법조항 간에 논리적 간섭이 생긴다. 예컨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우생학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폐지에 찬성할까? 유보적일 수 있다. ‘태아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결 외에도 장애인 인권이라는 새로운 축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임-라인’은 무엇을 경축해야 할지, 무엇을 탄식해야 할지 합의가 어려운 대상이다. 이 역사가 가정하는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도 마찬가지로 합의하기 어렵다. ‘우리에 의탁하는 정치’에 익숙한 내게 이 타임-라인은 그래서 좀 더 불편함을 안겨준다.

더불어 관객이 법조항 밴드를 선택하여 옷에 다는 과정은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의 입장을 더욱 드러내며 개개인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한다. 분절된 타임-라인이 개개인의 신체와 만나 시간적, 공간적 탈/접합(dis/articula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타임-라인은 단선적인 진보의 연대기에서 복수의 연표로 분절되어 여러 개인의 몸에 부착되는 행위로 복수의 동시대성을 만들어낸다. 내게 그 점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사례는 “2008 호주제” 였다. 사라진 지 한참이 된 호주제를 선택한 참여자가 많다는 사실은 법조항이 폐지되어도 남아있는 관습과 문화,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속기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어떤 법조항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현재의 이슈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이다. ‘시대착오’, ‘시기상조’는 모두 주체의 위치에서 타자의 현재를 규정하고 위계 짓는 말이다.

타임-라인: 일상과 구분 짓기, 재연결하기

한편 법조항 타임-라인은 전시장에서 협력자의 손바느질을 거쳐 참여자의 의복으로 이동하면서 각자의 새로운 문맥과 만나게 된다.

전시장에서 타임-라인 밴드를 다는 직접적인 행위는 이 작업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따뜻한 분홍빛 벽면, 협업자와 관객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반원형의 테이블, 갈아입는 용도로 마련된 여성 기성복, 이러한 요소들은 법조항을 선택하고 소지하는 과정을 비장하고 엄숙하기보다는 친밀하고 신체적인 경험으로 유도하는 듯하다. 타임-라인 밴드를 어디다 달지 상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객은 재단선, 사이즈, 위치 등을 고려하며 자신의 신체를 더 의식적으로 탐색하게 되고, 옷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의식하게 된다. 나아가 위반도 한다.^[3] 바지를 맡겨 놓은 동안 구비된 치마를 입고 즐겁게 활보했던 어느 남성 관객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가가 구성한 공간은 일상적인 드레스 코드가 중지되는 의례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여자이지만 치마를 잘 입지 않는 내가 전시장에 마련된 주름치마를 보면서 ‘여성’의 일반화된 기호로서의 치마에 밀착감을 느끼는 이가 몇이나 될까?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정체성이 낮아져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몸의 다채로운 의미(행동주의 몸, 소비하는 몸, 정치적인 몸, 과학에서의 몸, 표현적인 몸)는 여기서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거나 위계화되지 않는다.

전시장을 떠난 이후의 과정은 역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일상에서 선택한 법조항의 체화된 의미를 찾도록 만든다. 이는 “진보적인 시민”으로서 나를 추상적으로, 초월적으로 정체화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실천을 요구한다. 밴드가 달린 옷을 입고 다니는 행위는 몸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이 머무는 장소를 의식하게 만든다. 타임-라인이 주변 동료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상대와 장소에 노출됨에 따라 소지자는 자신이 선택한 법조항을 예상치 못한 문맥에서 설명하거나, 감추게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언어와 신체, 장소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은 내게 시위에 참석하는 것과는 달리 나와 사회적 문맥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든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뱃지가 되는지, 오몰이 되는지, 아니면 철저히 간과되는지 경험을 통해 의식하기 때문이다.

<div><div></div>관계의 확장: 참여자에서 행위자로</div>
<div> <div><div>1953 형법 제269조 – 낙태죄 개정</div></div> <div><div>1962 균형법 제92조 6항 – 동성애 처벌법</div></div> <div><div>1968 주민등록법 시행령</div></div> <div><div>1986 모자보건법 제14조 – 우생학적 차별</div></div> </div>

^[3] 평소라면 조심스레 기입할 개인정보를 공공연히 써보라고 초대하는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세요.)〉 또한 우리가 국가 행정적 절차에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도록 초대한다.

<div><div></div>1999 모자보건법 시행4령 제15조 — 강제불임화</div>
<div> <div><div>〈타임-라인:국가통제코드(검정리본밴드)〉에서 법조항의 선택이 관객의 재량에 맡겨진다면 〈타임-라인:국가통제코드(나의 출생연도)〉는 작가가 매개자로서 국가통제코드가 개정되거나 폐지된 연도가 출생연도인 참여자를 찾는다. 그 기준은 왜 출생연도일까? 출생은 인간이 공동체의 성원권을 갖게 되는 최초의 사건^[4]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의 출생연도에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규범으로 인해 성원권을 박탈당한 누군가에 대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종의 책임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된 이들은 특정 시기에 제정, 수정, 폐지된 법조항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이정표로서 전과 후를 상대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도 하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각자의 사연이나 개인적인 중요성을 드러내 보여주기보다는, 그가 가진 자신만의 위치에서 타임-라인을 소개하는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div></div> </div>
<div> <div><div>이러한 관계의 확장성은 더 나아가 관객들에게까지 적용된다. 참가자 네 사람의 사적 공간에 설치된 타임 라인은 cctv를 통해 전시장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전시 기간 동안만 볼 수 있는 영상의 시간적 한계, 반복 불가능성이 관객을 구경꾼보다는 목격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듯하다. 이러한 역할의 재설정은 왜 중요한가? 작가의 말처럼 이 법조항들은 당사자가 몸에 걸치거나 집에 걸어놓기는 부담스러운 텍스트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를 “차별적으로 나누는” 법조항 작업을 사적인 공간에 여백란 듯이 게시하고 목격하는 과정은 낙인의 재생산, 해체에 관여된 다양한 위치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를 통해 몰랐던 법조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다던가, 대화를 해본다거나, 장애인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본다던가, 좀 더 적극적인 연대자가 되는 사람 등 다양한 위치가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유동적이다. 전시 기간 중에 1986년생을 찾는다는 설정은 준비과정에서 참여자를 찾지 못했던 우연적 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1층 로비에 걸린 공지와 전시장에 설치된 네 대의 모니터 사이의 빈 공간으로 제시되면서 작업의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러한 참여 과정과 참여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문화정치 행위자(agency)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하기 때문이다.</div></div> </div>

^[4] 신생아의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없다가, 태어난 아이에게 바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관습이 있다는 사실은 아기가 사회로 들어오기 전 문지방 단계들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생은 생물학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성원권을 얻게 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